

1. 의결주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문판매업자 및 전화권유판매업자 신고와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 등록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실제 공동이용 대상인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 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2. 3. ~ 3.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를 “사업자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별표 1의 3.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란 제3호 중 “사업자등록증(확인)”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며, 확인)”으로, “사본”을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별표 7의 3. 제3호 중 “사업자등록증(확인)”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며, 확인)”으로, “사본”을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별표 4 신고인 자산 부채의 상호의 신고번호의 소재지의 대표자의 성명(서명 또는 인)의 주소의 전자우편주소란 신고 사항의 변경 전란의 2.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확인)”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며, 확인)”으로, “사본”을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별표 10 신고인 전자우편주소의 상호의 법인등록번호의 소재지의 대표자의 성명(서명 또는 인)의 주소란 신고 사항의 변경 전란의 2.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확인)”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며,

확인”으로, “사본”을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신청 첨부서류 등) ① ~ ④ (생략)	제11조(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신청 첨부서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 ----- ----- ----- -----. ----- ----- ----- ----- <u>사업자등록증</u>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사업자등록증</u>	3. <u>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u>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 방문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산	부채	자본금
참고 사항 (취급품목)	[]건강식품, []화장품/미용용품, []교육/도서, []생활용품/세제류, []회원권/상품권, []가전, []컴퓨터/사무용품, []통신기기, []자동차/자동차용품, []의류/패션,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발기인이 확인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 297mm[백상지 80g/㎡]

[] 방문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산	부채	자본금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u>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u>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변경 확인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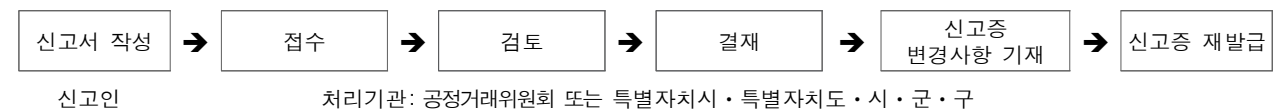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 297mm[백상지 80g/㎡]

[] 다단계판매업
[]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본금의 규모		
	참고 사항 (취급품목)	[]건강식품, []화장품/미용용품, []교육/도서, []생활용품/세제류, []회원권/상품권, []가전, []컴퓨터/사무용품, []통신기기, []자동차/자동차용품, []의류/패션,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청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1. 자본금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후원방문판매업만 해당합니다) 3.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4.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5.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발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니다) 3. <u>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u>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210mm × 297mm[백상지 80g/㎡]

[] 다단계판매업
[]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신고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변경			
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업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변경 확인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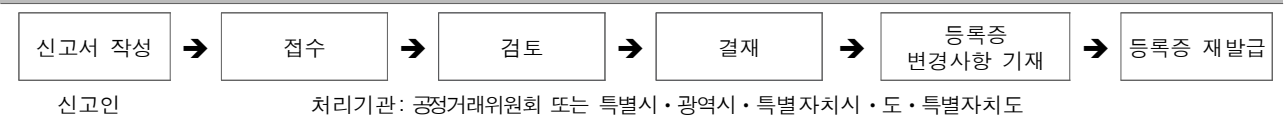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210mm× 297mm[백상지 80g/㎡]